

# B 4

## 위생 공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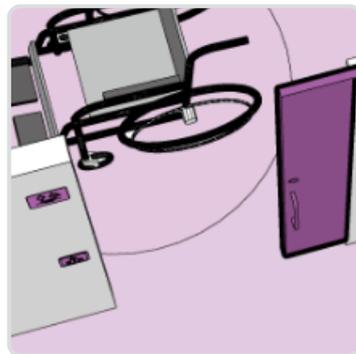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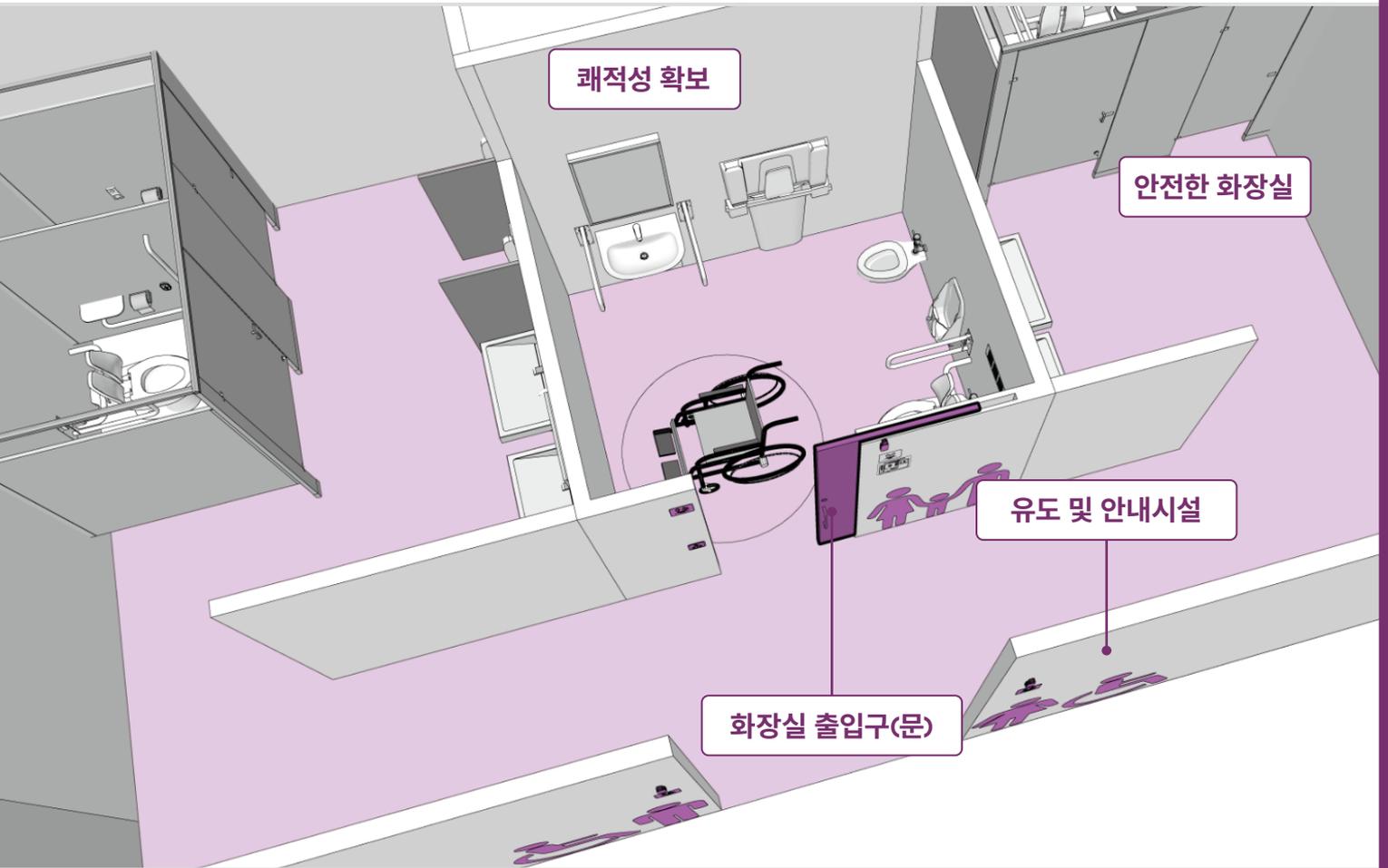
(1)	화장실의 기본 구성	255
(2)	모두를 위한 화장실	262

### 계획원칙

위생시설은 다양한 사용자를 고려하여 누구나 찾아가기 쉬운 위치에 설치하고, 편리하고 쾌적한 이용이 가능하여야 하며, 안전사고 방지와 위급상황시의 대응이 가능하도록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.



# (1) 화장실의 기본 구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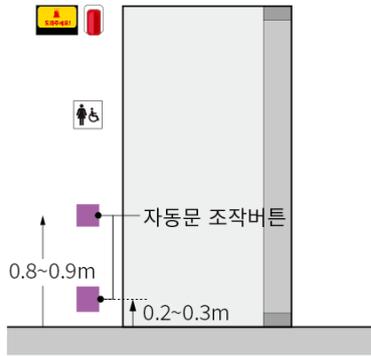


## 화장실 출입구(문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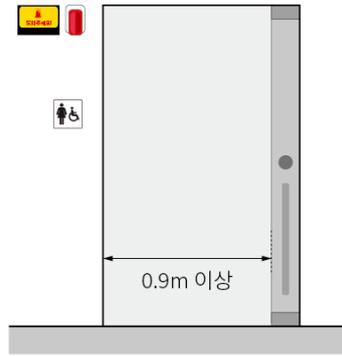
시설 내 화장실은 휠체어 사용자 등이 스스로 접근 및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며, 충분한 출입구 공간을 확보한다.

- 출입구는 이동 통로에서 1/24 이하의 기울기로 수평 접근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.
- 출입구 문의 유효폭은 0.9m 이상을 확보하며, 출입문을 열고 닫는 데에 필요한 날개벽 공간은 0.6m 이상 확보한다. 단, 출입구만 있고, 별도의 출입문이 없는 경우 날개벽 공간 기준은 예외로 한다.
- 출입구(문)의 전후면 수평 활동공간은 1.2m 이상을 확보한다. 이때 수평 활동공간은 출입문 개폐에 필요한 소요 공간을 제외한 순수 활동공간을 말한다.
- 이외의 화장실 출입문은 다음을 참고하여, 화장실 주 사용자 유형에 따라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설치한다.
  - 이동약자를 배려하여 자동문 설치를 우선 검토하며, 자동문 설치 시 자동문 버튼은 손이나 발로 열 수 있도록 위, 아래로 설치
  - 이동 통로와 화장실 내부, 문턱 하부 등은 단차 없이 설치
  - 성별 이용에 따른 사생활 보호가 가능하도록 출입구의 위치 조정
  - 그 외 사항은 '공공건축물-내부 이동 공간-수평 이동 공간-건물 내부 출입문' 기준을 준수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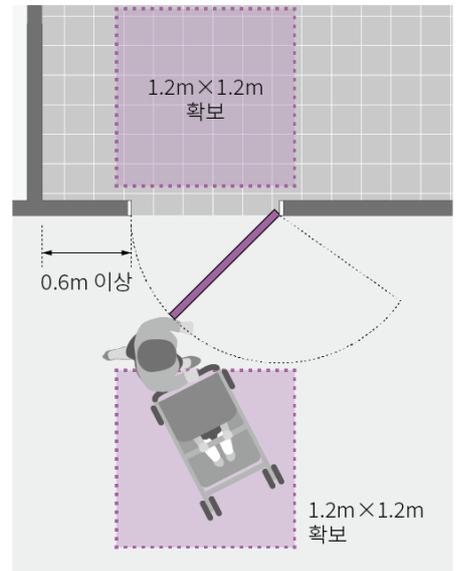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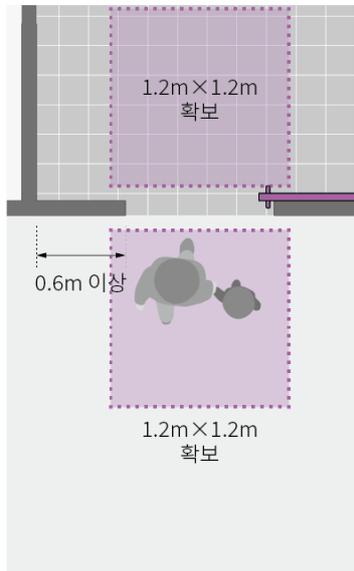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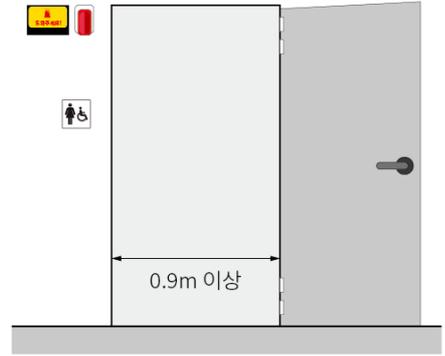
자동문



미닫이



밖여닫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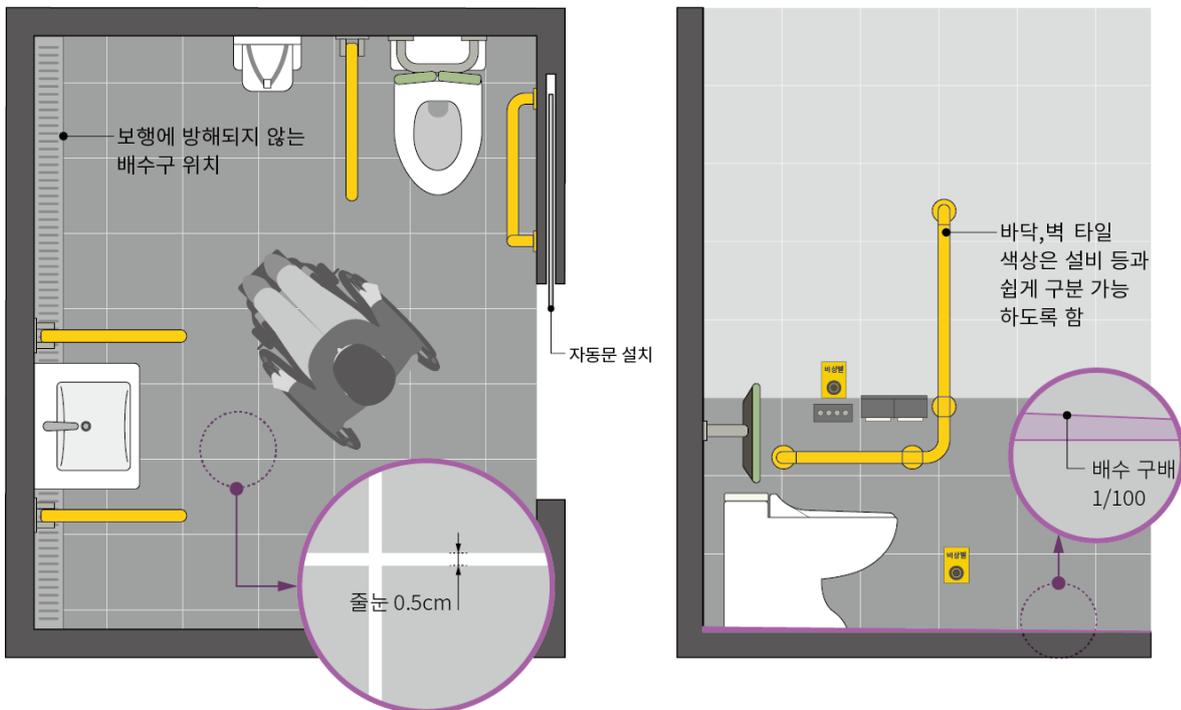
## 안전한 화장실

물을 이용하는 위생시설의 바닥 등은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설치하고,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는 것과 더불어 위급 상황에서 구호 요청을 빠르게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다.

### 바닥 마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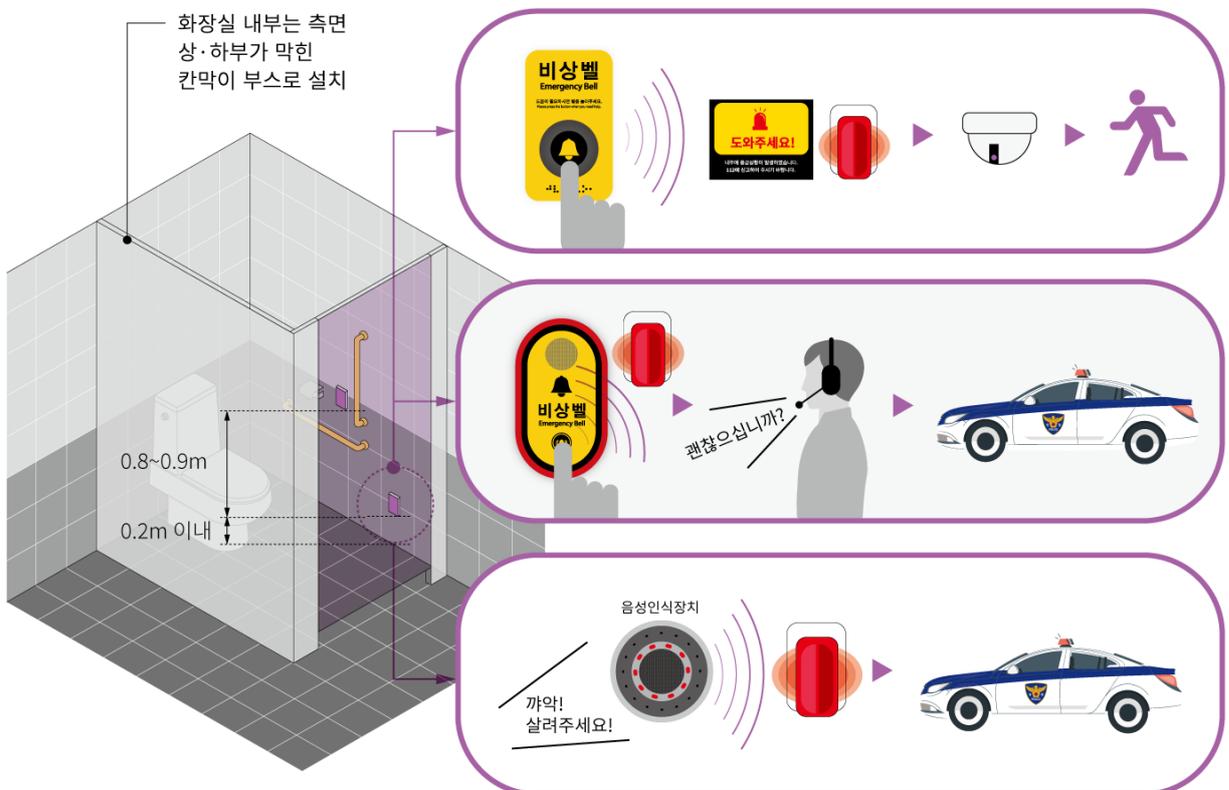
- 바닥 표면은 물이 묻어도 미끄럽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.
- 타일 혹은 판석 마감인 경우에는 0.5cm 이하의 줄눈으로 하고, 걸려 넘어질 우려가 없도록 평탄하게 마감한다.
- 바닥과 벽체의 마감재 색상은 위생 설비, 보조 손잡이, 출입문 등과 쉽게 구분 가능하도록 설치한다.
- 바닥은 상시 건조가 가능하도록 배수 계획(단, 배수 구배 1/100 이하, 보행 시 장애가 되지 않는 배수구 위치 조정 등)을 수립한다.
- 바닥 마감재는 청소하기 용이하도록 틈새가 적고, 파손 시 마감재 교체가 용이한 재료를 사용한다.

\* 실내 바닥 마감재는 습윤 시 C.S.R. 0.4 이상 성능을 확보한 마감재 적용



## 위급 상황에서의 대응

- 화장실 접근로 및 출입구에 적정 조도 확보 및 CCTV를 설치한다.
- 화장실 내에 안심 비상벨·비상 통화 장치를 설치하며, 비상벨의 수신반은 관리자의 직접 출동 또는 외부에서의 즉각 인지 등이 가능하도록 한다.
- 비상벨 조작반은 대변기 칸막이 내부, 세면대 주위, 출입문 주위 등 2곳 이상 설치하되, 0.8~1.2m 내외 높이 및 바닥에 넘어져서도 이용 가능하도록 설치한다.
-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등 단독 사용하는 화장실에는 비상벨 또는 비상 통화 장치를 설치하되, 대변기에 앉은 상태 및 바닥에 쓰러진 상태 모두 이용 가능하도록 2곳 이상 설치한다.
- 비상벨 외에 비접촉식 도움 요청 시설(근거리 무선 통신 기반 비콘, 음성 인식 비상벨 등) 설치를 권장한다.
- 불법 촬영 등의 범죄 예방을 위해 화장실 내부는 측면 상·하부가 막힌 칸막이 부스로 설치한다. 단, 칸막이 출입문 등 전면은 환기를 위해 위·아래가 뚫린 문을 설치한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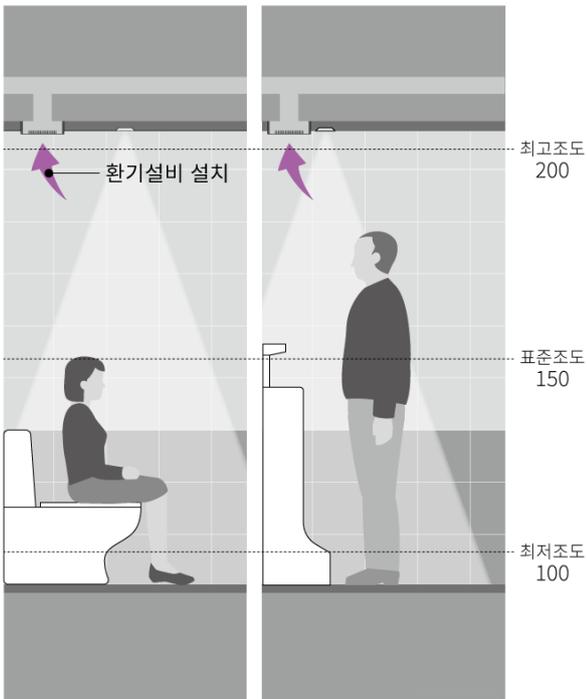
## 쾌적성 확보

다양한 사용자가 심리적·물리적 쾌적함을 느낄 수 있도록 적절한 조도 및 온도 유지와 환기 성능을 확보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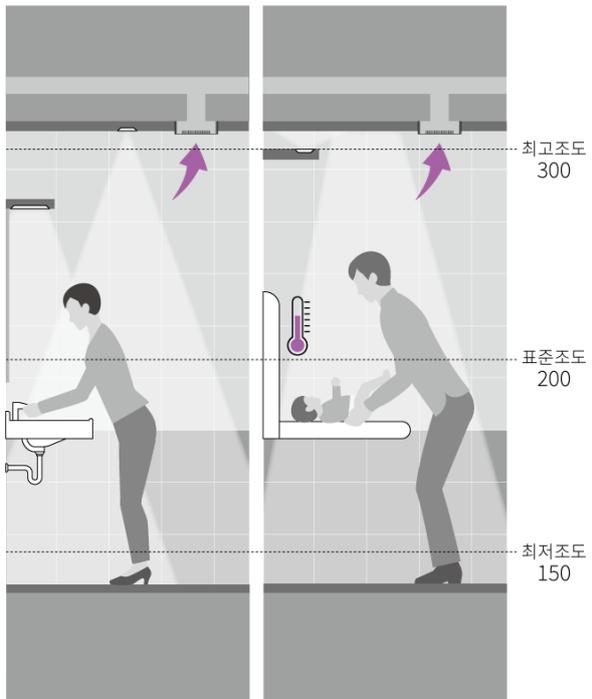
### 조명과 환기

- 조명은 발열량이 적고 고효율인 LED 조명 기구를 활용하도록 한다.
- 작업, 세면, 조작 공간에 음영이 지지 않도록 조명을 설치하되, 눈부심이 없도록 한다.
- 화장실 입구, 통로, 단위 부스, 세면기, 소변기 등에 적합한 조명 기구를 설치하여 이동 및 이용 위치별로 조도를 확보한다.
- 화장실은 외기에 면하게 배치하여 자연 채광과 자연 환기를 적극 활용한다.
- 동절기 또는 하절기에 상관없이 상시 쾌적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적절한 온도와 습도 유지가 되도록 하며, 환기 설비를 설치한다.

공간 전반



작업 공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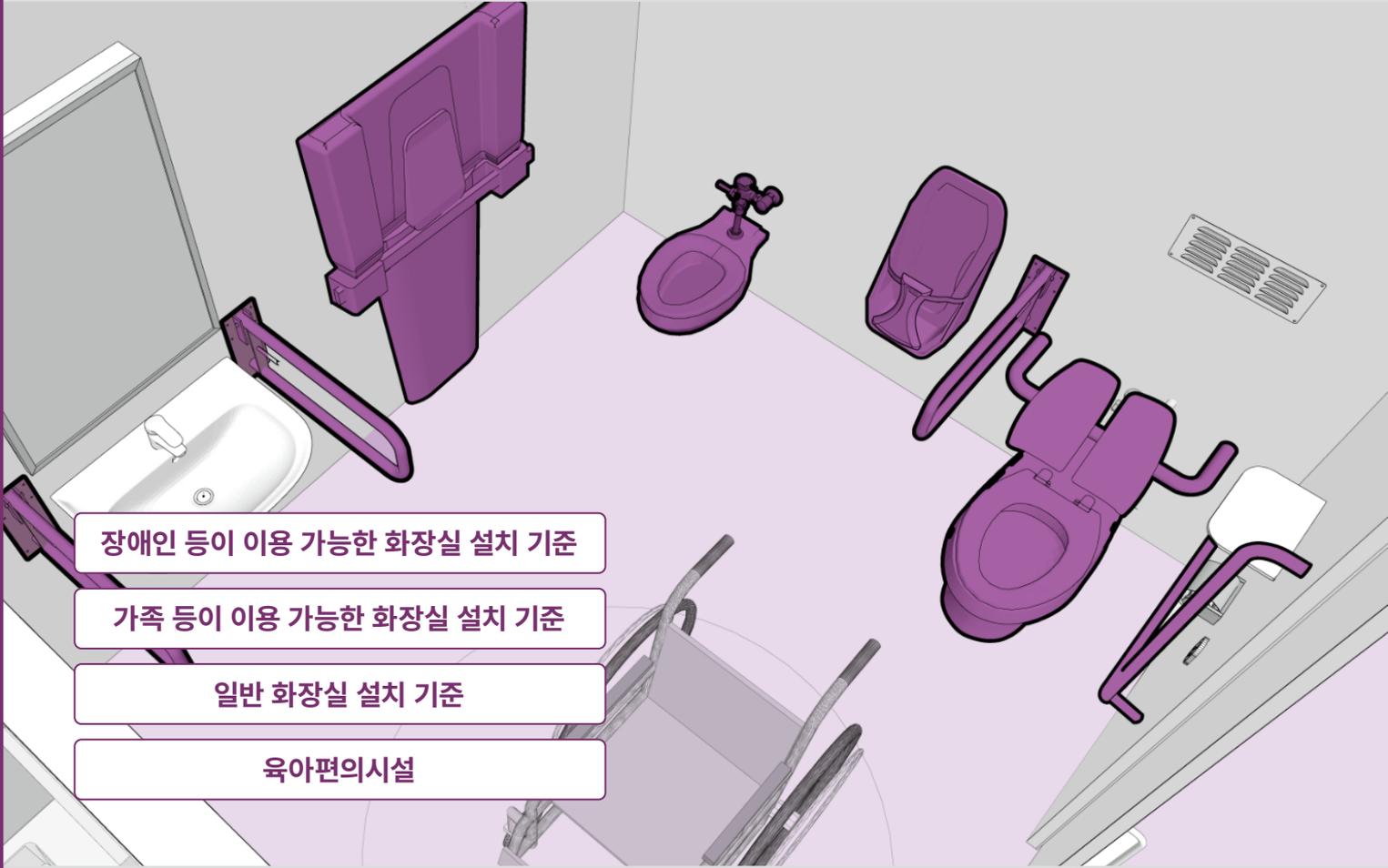
## 유도 및 안내시설

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고 멀리서도 인지할 수 있도록 유도 및 안내시설을 설치하며,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도 쉽게 알 수 있는 안내 표지판을 설치한다.

- 복도에서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화장실 출입구 주변 벽, 바닥, 천장 마감재 등을 달리하여 남녀 화장실, 다목적 화장실의 시인성을 높인다.
- 안내사인은 로비, 보행통로 등 주요 동선에 연속하여 설치한다.
- 승강기 홀 등 수직 이동시설의 각 층에 대한 안내판 등에 이용 가능한 화장실을 점자를 병기한다.
- 외국인을 포함하여 누구나 알기 쉬도록 그림문자를 적극 활용한다.
- 위생시설별 기능에 대한 적절한 안내(장애인 이용 가능, 다목적, 다기능 안내, 영유아 동반자 이용 가능 등)시설은 촉지도식 안내판과 통합하여 설치한다.
- 시각장애인이 사용 가능한 화장실의 점자 안내 표지판 전면에는 표준형 점형블록을 설치한다.
- 화장실 출입구 옆 벽면의 1.5m 높이에 점자 표기를 포함한 남녀 구분 안내 표지, 화장실 내부를 안내하는 촉지도식 안내 표지, 음성 유도 장치 등을 설치한다.



## (2) 모두를 위한 화장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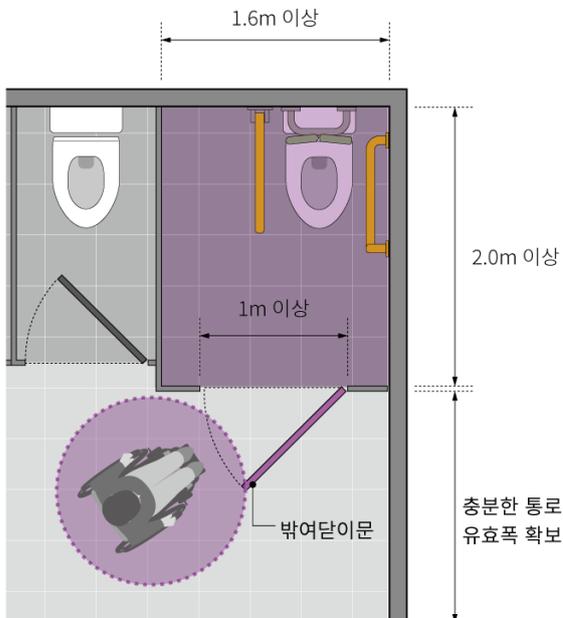


##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설치 기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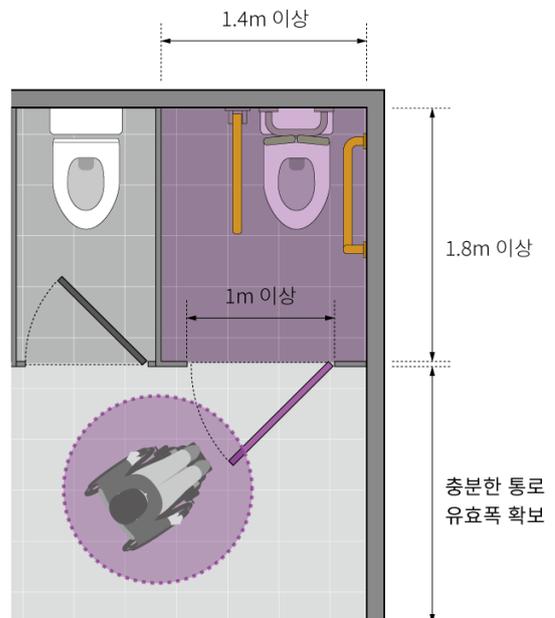
건물의 주 진입층을 포함하여, 각 층에 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는 남녀가 구분된 화장실을 각 1개소 이상 설치한다.

-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은 다음의 기준을 준수한다.
  - 일반 화장실과 구분하여 별도로 설치할 때에는 내부 유효 크기를 2m × 2.1m 이상 확보하고, 일반 화장실 내부에 설치할 때에는 1.6m × 2.0m 이상 확보
  - 누구나 이용 가능한 출입구와 출입문을 설치하고, 내부 휠체어 사용자의 활동공간을 확보
  -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하기에 적절한 설비(보조 손잡이, 대변기 등받이, 세정 장치, 비상 호출 장치 등)를 설치
  - 내부에 시각 및 청각 경보 장치 설치 및 적절한 안내시설 설치
  - 장애인 이용 가능에 대한 적절한 안내시설 설치
  - 주 진입층 외에 층별로 남녀가 구분된 장애인 화장실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시설의 여건, 사용자 현황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을 설치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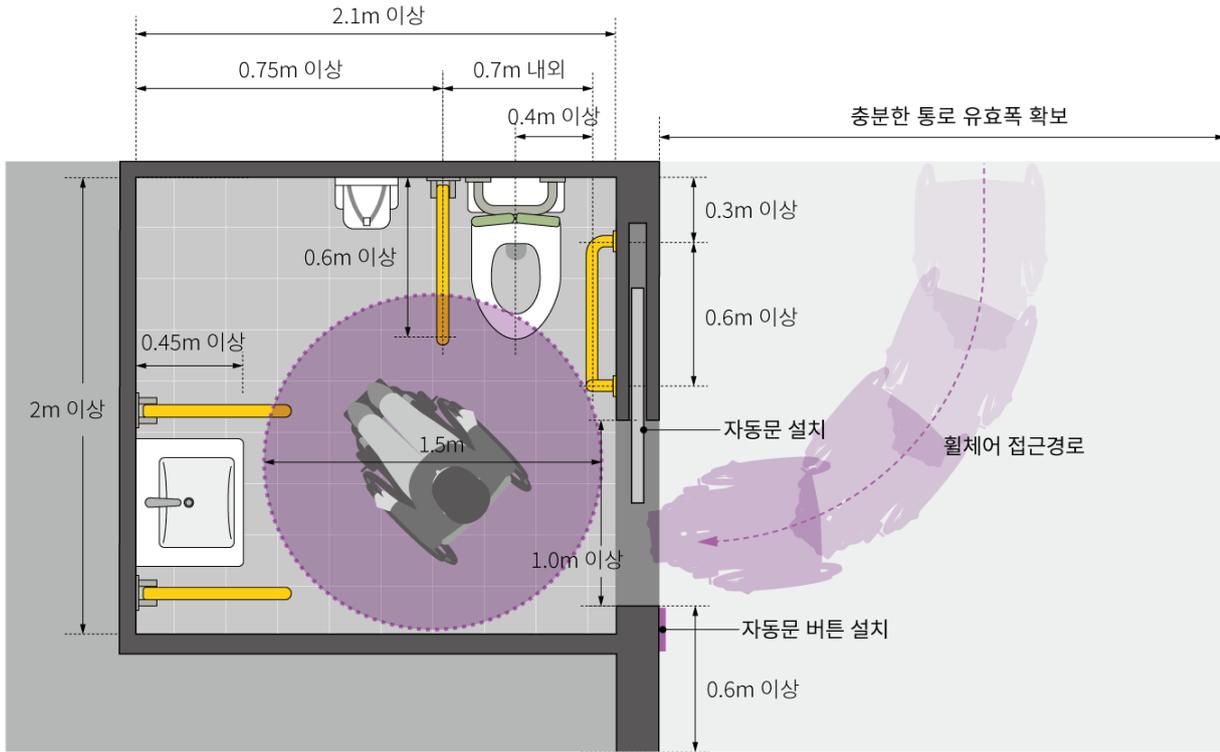
일반화장실 내 설치 시  
2019.9.27. 이후 준공 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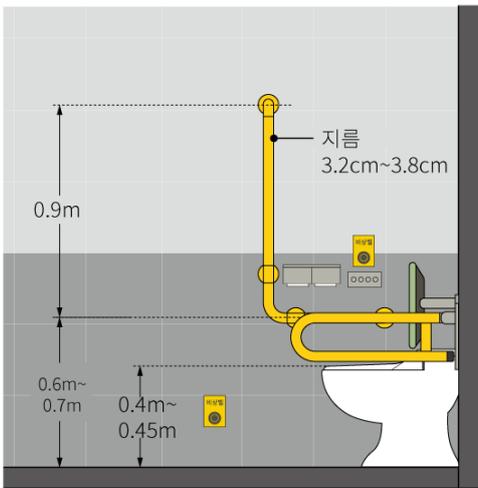
2019.9.27. 이전 준공 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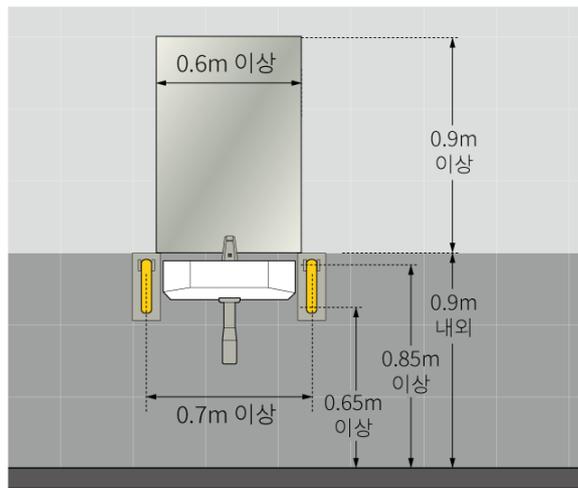
**별도 설치 시**  
장애이용 화장실 평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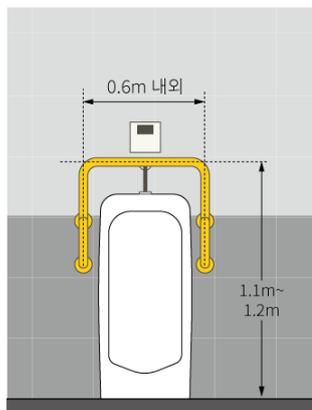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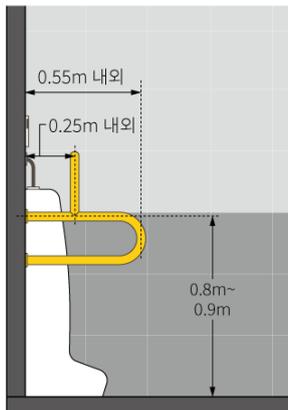
**대변기**



**세면대**



**소변기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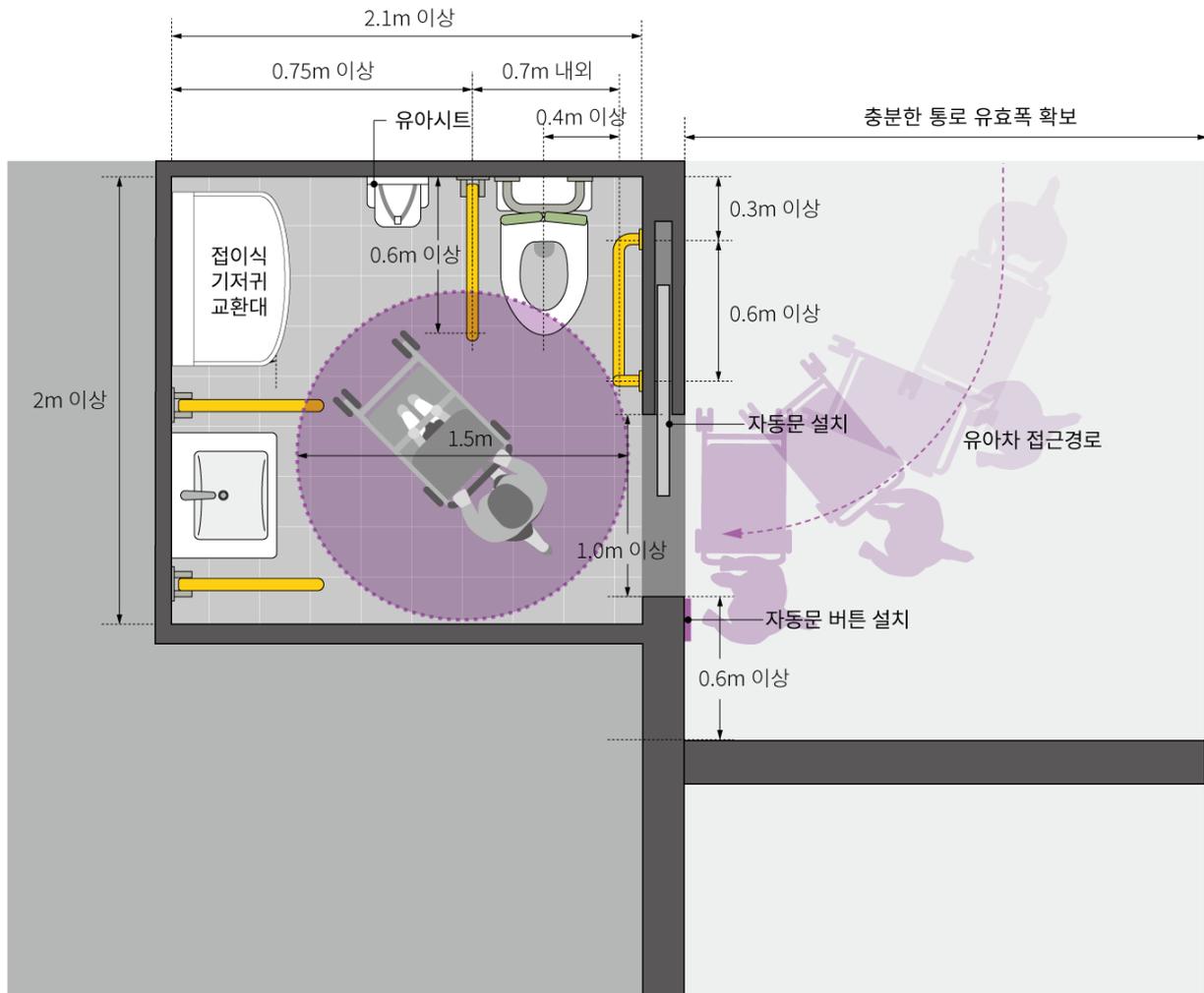


## 가족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설치 기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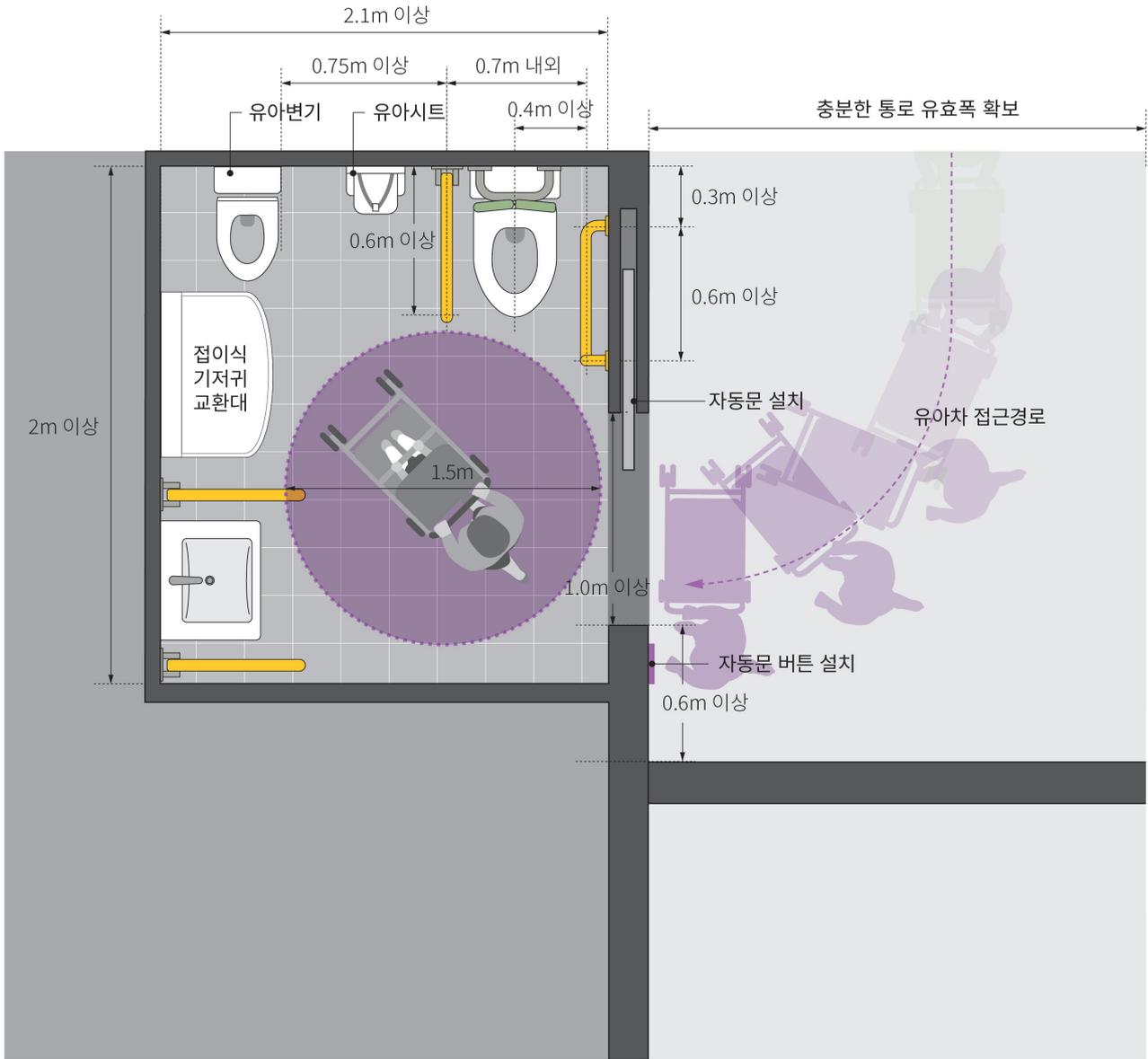
건물 내 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일반 화장실 외에 가족 등 이성 간 구분 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한 화장실을 주 진입층 또는 시설의 주 이용시설에 위치한 층에 별도로 1개소 이상 설치한다.

- 가족 등 이성 간 구분 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한 화장실은 다음의 기준을 준수한다.
  - 화장실 내부 유효 크기 2m × 2.1m 이상 확보
  - 내부에는 휠체어, 유아차 등의 활동공간 확보
  - 남녀 일반 화장실과 다른 별도의 출입구 이용이 가능하도록 설치
  - 노인, 어린이, 영유아 동반자 등을 배려한 시설(간이 샤워, 기저귀 교환대, 유아시트, 보조 손잡이, 어린이용 위생설비 등) 설치
  - 가족 이용 등 다목적에 대한 적절한 안내시설 설치

최소 규격 설치 시



확장 규격 설치 시(권장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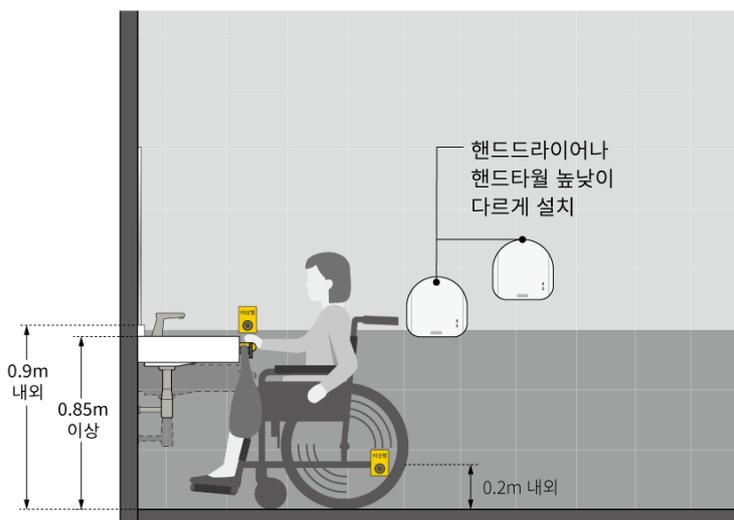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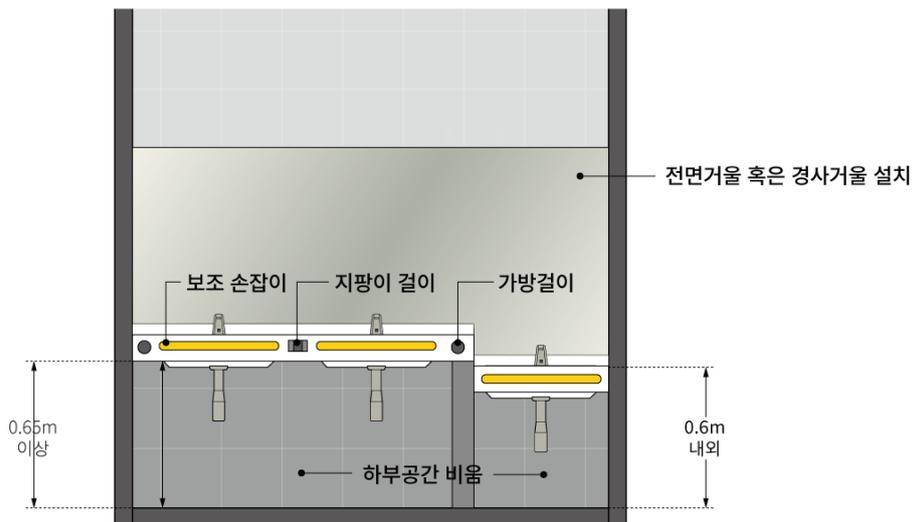
## 일반 화장실 설치 기준

일반 화장실은 시각장애인, 고령자, 어린이 및 영유아 동반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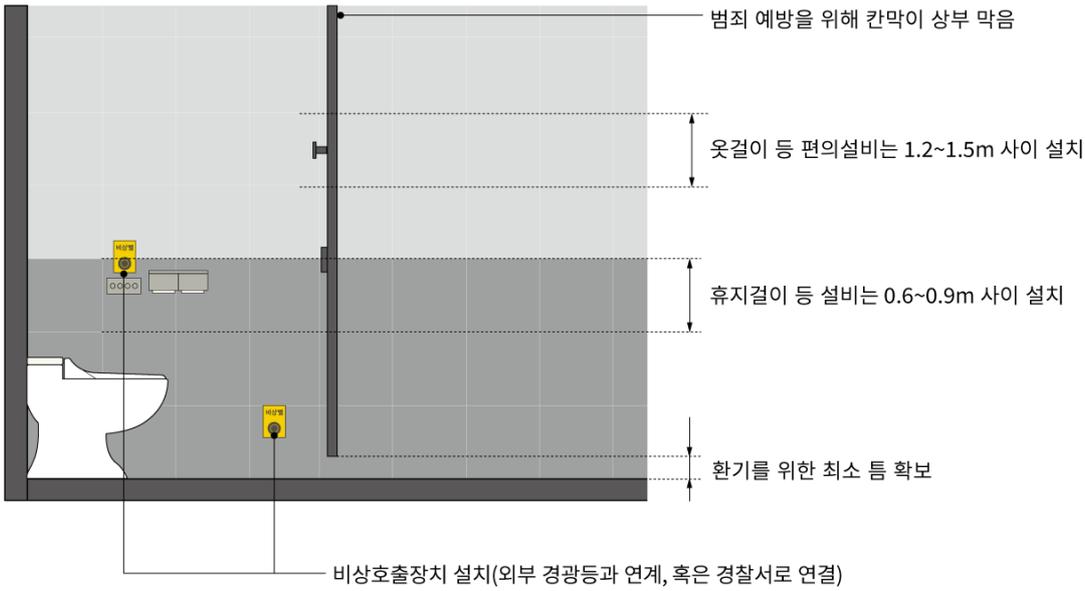
### 화장실의 구조

- 휠체어 사용자 등 누구나 이용 가능한 출입구와 출입문을 설치한다.
- 시각장애인 및 지팡이 사용자 등이 이용하기에 적절한 설비(소변기, 세면대, 보조 손잡이 등)를 설치한다.
- 휠체어 사용자 등도 함께 이용 가능한 세면대로 설치한다.
- 남녀를 구분하여 설치하고, 비상 호출 장치와 시각 및 청각 경보 장치를 설치한다.

일반화장실 세면대의 구조



일반화장실 대변기의 구조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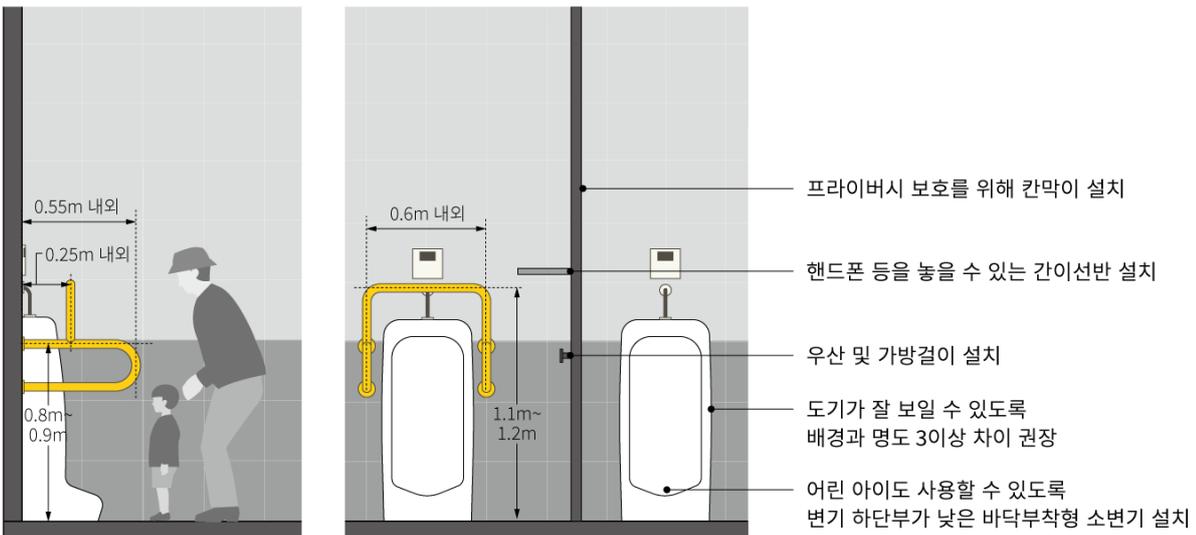
잠금장치 및 사용중 안내



사용중을 알릴 수 있는 표시를 주어야 하며, 색상 및 문자(다국어 포함)로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

조명으로 나타낼때도 색각이상자를 고려하여, 사용중일 때는 불이 켜지는 방식으로 유도하며, 픽토그램 및 문자(다국어 포함)를 병행 설치

일반화장실 소변기의 구조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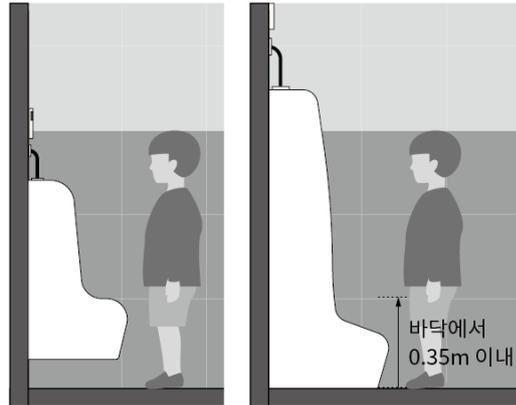
### 어린이 등 영유아 배려시설 설치 기준

- 어린이 등의 사용을 고려하여, 어린이용 세면대, 소변기를 설치한다. 어린이용 소변기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일반 소변기의 하단 높이를 바닥에서 0.35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한다.
- 어린이 등을 배려한 대변기, 소변기, 세면대(거울 포함)를 남녀 화장실 내부에 각각 설치한다.
- 위의 시설이 별도의 '모두를 위한 화장실' 내에 설치된 경우에는 설치 제외가 가능하다.

어린이 대변기의 구조



어린이 소변기의 구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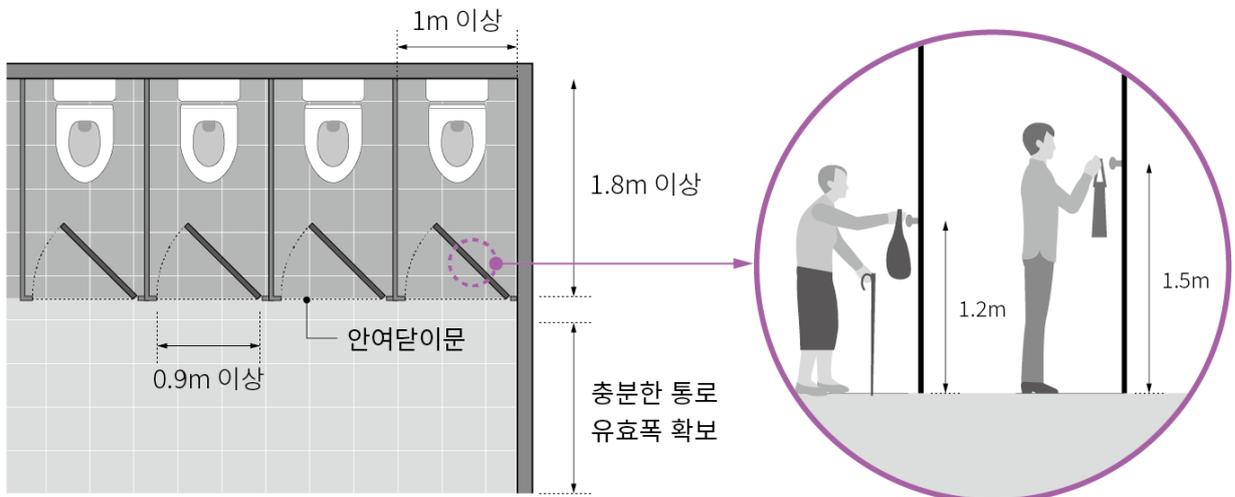


어린이 세면대의 구조



### 다기능 일반 화장실 설치 기준

- 대변기 부스의 면적 폭은 1m 이상, 깊이는 1.8m 이상, 출입문 폭은 0.9m 이상을 확보한다.
- 대변기 부스 내 보조 손잡이, 간이 선반, 옷걸이 등을 설치한다.
- 그 외 '일반 화장실 설치' 기준을 만족시킨다.



## 육아편의시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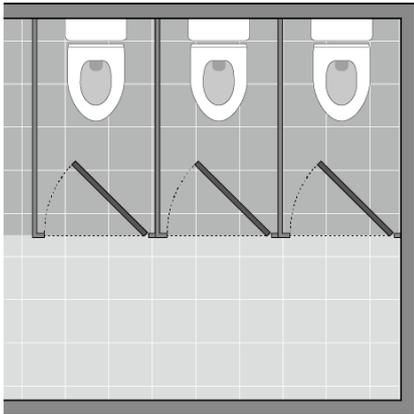
남녀 화장실에는 기저귀 교환대, 유아시트 등의 육아편의시설을 설치한다.

### 설치 장소 및 활동공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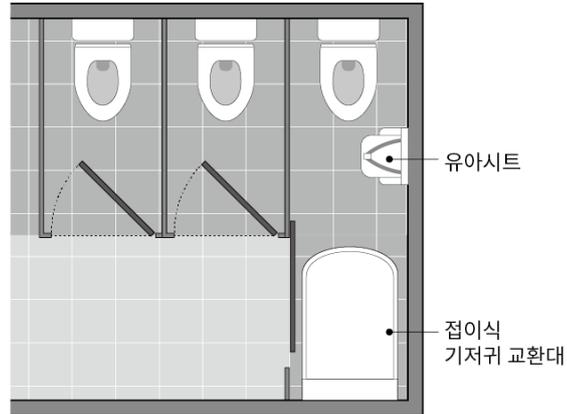
- 남녀 화장실에 기저귀 교환대를 각 1개소 이상 설치한다.
- 남녀 화장실 대변기 칸막이 내 영유아 거치대를 각 1개소 이상 설치한다.
- 위의 시설이 별도의 ‘모두를 위한 화장실’ 내에 설치된 경우에는 설치 제외가 가능하다.

#### 일반화장실 내 육아편의시설 설치

기존화장실



변경 타입 1



변경 타입 2

